모의법정 사업제안서

사 업 명		청소년모의법정 대본 공모 및 공연 사업		
사업 기간		2004. 5. ~ 2004. 12.	사업 지역	전국
총 소요액		10,000,000원 이상 (국가인권위 공모사업 선정 7,000,000원 / 기타 각 참가단체 일정분담금)		
제안 단체	단 체 명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부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주 소	(442 - 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연 락 처	전 화 : 031-213-2105	팩 스 : 031-215-4395	
		Email : humandasan@hanmail.net	Hompage : www.rights.or.kr	
	담당자	송원찬(011-750-3455)		

전국교직원노조에게 청소년모의법정 사업을 제안합니다.

□첨부서류 국가인권위 사업계획서 (1부)
모의법정기본형식(1부)

2004년 4월 14일

다산인권센터 등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계획서

2004년도 단체협력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04 청소년모의법정 대본 공모 및 공연 사업

2. 사업목적

○ 사업 취지

- 인권단체들이 공동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인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인권사업이 각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 청소년들이 모의법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고민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가치판단능력과 비판적·논리적 사고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한편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사업 목적

1) 어른중심의 사고와 관행으로 제한되고 유보된 청소년 권리의식을 함양
2)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모
3) 청소년들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현실인식 고양
4) 우수 공모시나리오를 선발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진행

3. 사업추진기간

○ 2004년 2월 ~ 2004년 11월

4. 사업추진방법

1) 공모내용

- 청소년들이 학교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이나 문제들로 참신한 내용의 자유소재 및 주제 (예, 청소년폭력, 청소년 원조교제, 왕따 및 따돌림등 청소년문제나 두발문

제, 교칙문제등 학교생활상의 문제,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 등)

- 가능한 뚜렷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주제가 타당할 것임.

2) 공모형식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줄거리 포함)기준으로, 20-30분 정도의 분량
- 제출형식 : PC로 11포인트로 작성해 A4로 제출

3) 신청자격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누구나

4) 당선작 및 수상

- 대상 1편, 우수작 2편, 장려상 3편
- 상장과 상금 수여

5)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모의법정 부합성, 참신성, 논리성, 합리성 등
- 심사위원 : 각 참가단체 관계자와 연극관계자 5인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4월	기획 및 홍보물 제작	
5월 ~ 9월	공모기간	- 전국 청소년 관련 홈페이지 및 홍보물 배포 등 홍보
9월	공모작 심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9월 ~ 10월	당선작 연극 준비	- 당선작 중 1편 선정 - 연극반 선정 및 연습
11월	공연(학생의 날)	- 공연지역은 미정

6.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킨다.

2) 청소년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자발적 문화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7. 사업비 구성(사업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총 사 업 비 : 10,000천원 (100%)

2) 신청예산(보조금) : 7,000천원 (70%)

3) 자 부 담 : 3,000천원 (30%)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10,000천원	
보 조 금	7,000천원(70%)	
홍 보 비	2,100천원(21%)	포스터 : 210원×10,000부=2,100천원
발송비	3,200천원(32%)	발송소모품 = 100천원 발송인건비 = 300천원 전국 학교 발송우편비 370원(6%할인) 2,000천원 공문인쇄 100천원 봉투인쇄 700천원
상금	1,700천원(17%)	대상 500천원 × 1명 = 500천원 우수상 300천원 × 2명 = 600천원 장려상 200천원 × 3명 = 600천원
자 부 담	3,000천원(30%)	
회의비	1,000천원(10%)	
심사위원비	1,000천원(10%)	
공연지원비	1,000천원(10%)	

< 청소년 모의법정 기본 형식 >

1. 목표

-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재판진행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배운다.
- 논리적 ·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2. 준비사항

- 모의법정 장소 및 시설, 판사 법복, 의사봉, 마이크, 기타

3. 내용

1) 재판주제와 역할 정하기

- 재판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결정한다.

· 재판장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배심원 10명, 피고, 원고, 서기 1명, 정리1명, 증인 2-3명 정도, 교도관 1명, 방청객

- 문제에 대한 주제를 결정하여 대본을 작성한다.
- 맡은 배역에 따라 연습을 한다.

2) 모의재판 실행하기

- 적당한 장소에 모의법정을 설치한다.
- 피고, 검사, 변호사, 배심원은 미리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 재판장이 입정한다.
- 개회사 :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 참석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재판상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 참가자를 소개한다.
- 개정을 선언한다.
- 피고인을 호출하면 피고가 입장한다.
-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소된 이유를 밝힌다.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 피고인이 자기 진술을 한다.
- 검찰 측 심문과 변호인 측 반대심문을 한다. 검사는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사는 반대심문을 한다.
- 증거조사(검찰 측, 변호인 측)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 호출을 한다.
-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심문을 한다.

- 검찰 측 의견진술(논고 낭독)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최후 변론)을 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형선언문을 낭독하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한다.
- 배심원 평결회의를 한다.
- 판결문을 선고하고 폐정한다.

3) 배심원 판결기준의 예

- 증거자료 조사(30%) : 충분한 자료로 인정되는가,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준의 내용인가.
  · 검사 논고, 변호사 변론(30%) :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비교했을 때 사실을 기재했는가
  · 증인 신문(40%) : 증인들은 얼마나 사실대로 말했는가, 증인을 신문할 때 얼마나 성의있게 질문했는가

4) 판결에 대해 찬반의견 나누기

- 재판과정을 지켜본 느낌과 판결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주고받는 자유 토론 시간을 갖는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 자신은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판결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본다.

4. 유의사항

- 청소년 법정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사전에 준비모임을 가져 재판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한다.
- 판결할 주제(피고)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이나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
-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 주로 뚜렷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주제로 적당하다.
- 재판과정을 익히기 위해 직접 법정을 찾아가 참관을 해본다. 참관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확실한 방문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도자가 현장학습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한다.
- 재판과정이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 상황을 재연하는 극을 형상화할 수도 있음. 즉, 재판형식에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임.

5. 참고자료

1) 모의법정 구성원들의 역할

- 재판장 :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증인 :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그 진술이 증언이다.

- 검사 :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권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권 등이 있다.

- 피고인 :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 변호사 :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직무행위는 각국의 법에 따라 다르다.

*** 대본 줄거리 요약본) 청소년한마당 '왕따 방관죄' 모의법정**

학교폭력의 방관자를 법정에 세운다.

왕따와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이 심판대에 오른다.

수원청소년네트워크는 17일 오후2시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꿈의 체육관에서 열리는 '2000 청소년동아리 한마당'에서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만 했던 학생을 법정에 세운다. 이날 수원 영덕고와 영복여고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열고 스스로 재판관과 검사, 변호사가 되어 그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만을 따져보던 학교폭력의 문제를 방관자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 중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들을 뽑고 그 배심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방관자의 유죄를 평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왕따나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냥 기쁘고 활기차게 보내야 할 그 젊은 날을 골방에 쳐 박혀 슬프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청소년까지도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나 학교가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학교폭력의 실상은 결

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까지 모두 침묵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방관자들이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 대항해서 맞서 싸운다면 다면 학교 폭력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소년네트워크는 사법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방관자를 법정에 세웠다. 방관자들의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왜 침묵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에서 깨어날 때만이 학교폭력의 문제는 물론, 우리 사회의 온갖 불의가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새롭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은 단순히 폭력현장에서 방관하고 있던 한 학생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자 동시에 불의를 보고도 눈감고 살아온 우리 자신 모두를 이 법정에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본래 왕따식은 자유고등학교 1학년 5반 학생으로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왔다. 법정에 서게된 김방관도 같은 반 학생으로서 왕따식군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가 학교주변에서 강주먹군으로부터 두차례나 집중적인 구타를 당하는 동안 현장에서 함께 있었으면서도 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만류하지 않았다. 김방관의 이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을 방조한 범죄행위로서 양심법상의 학교폭력방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가 이 사건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재판의 진행은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을 번갈아 가며 심문을 하고, 이어서 검사측의 증인인 왕따식과 변호인측의 증인인 강주먹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후 심리를 마친다. 이어서 검사가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9명의 학생배심원들이 최종적인 평결을 하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김방관이 왕따식을 싫어한 나머지 그가 강주먹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쌤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주먹을 만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김방관이 비록 왕따식을 싫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주먹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용인한 적은 결코 없었다. 다만 왕따식을 도우려다가 자신도 함께 왕따를 당하거나 강주먹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다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

고 마지막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정점에 이른다.

먼저 검사가 열변을 토한다.

"누구나 다 인권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당한 인권침해의 현장에 있을 때 "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온몸을 던져 맞서 싸울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나마 약간이라도 인권이 지켜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용기있는 사람들의 용기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용기있는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결실을 아무런 대가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왕따식군이 폭력을 당할 때 폭력을 휘두르는 강주먹을 만류하고 맞서 싸웠어야 합니다. 설사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노"라고 외쳤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양심이 명하는 청소년들의 법입니다. 청소년들의 책무이며 적어도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1년간 학교폭력의 파수꾼이 될 것"이라는 구형하면서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그 누구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에 변호인은 차분하게 검사의 논고에 대해 반론을 펴나간다.

"우리는 오늘 검사님으로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님의 논고에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진정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며,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모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검사님은 피고인이나 이 시대 많은 청소년들의 방관을 질타하면서도 이 시대 어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따식이 그렇게 후미진 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시대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어른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기 전에 먼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학교폭력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다짐과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방관에 대한 유죄여부는 학생배심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학교폭력의 본질과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다.